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8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09. 20.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30호)
- 나. 회부일자 : 2022. 09. 23.
-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9. 28. 상정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1.12.16. 타법개정) 및 우리구 적극행정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 30018호)」(2019. 8. 6. 제정·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적극행정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2020년 10월 5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 2021년 6월 8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2(적극행정의 장려) 조항의 신설과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2021년 7월 27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2(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적극행정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

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서 해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절차·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 개정 전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시행 2020. 10. 5.]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318호, 2020. 10. 5., 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감사담당관), 02-2241-21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수립내용은 추진과제 발굴·시행, 우수공무원 선발·우대·교육·확산,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예방근절, 추진사항 점검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함.
-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위원의 해촉, 회의, 의견청취, 수당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을 규정하였음.

- 적극행정 제도의 취지는 공무원 개개인은 적극행정 및 성실행정을 수행할 의사가 있으나, 감사·징계에 대한 두려움, 기관장의 관심부족, 경직된 조직문화, 합당한 보상체계 미흡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을 보호 및 우대하고 적극행정의 저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써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2(적극행정의 장려) 조항의 신설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2(적극행정국민신청)과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적극행정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
----------	-------

제안 연월일: 2022년 9월 28일

제안 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을 더욱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6조제3항제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본문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한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제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본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 략) 2. <u>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u> 3.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u>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u>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u>3년</u> 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제8조(위원의 임기) ① ----- ----- <u>2년</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구 본청 및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인사상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구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성북구청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성북구청 소속 감사업무 부서의 장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민간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운영 등) 위원회 수당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조치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7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09. 20.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31호)
나. 회부일자 : 2022. 09. 23.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9. 27. 상정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상위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중 자치법규에 위임형식을 규정한 제63조의5제2항의 내용이 2018.6.30.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조례안은 2018년 6월 30일, 개정 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1)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 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지정하여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실적 공개, 자체평가 및 교육 등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구정운영 주요 핵심 과제 사업,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책임관인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선정,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음.
- 안 제9조는 정책실명제 담당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나 공개하기 어려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였고,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정책실명제 사업관이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으나, 해당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구 정책실명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1
----------	-------

제안 연월일: 2022년 9월 27일

제 안 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사업비와 용역비를 하향조정하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성북구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여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책임감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비 “30억원” 을 “20억원” 으로, 용역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을 “5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으로 수정.
- 위원회 위원에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을 신설함.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3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5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으로 수정한다.

안제5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비 <u>30억원</u>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 <u>20억원</u> ----- -----. ----- -----.
3. <u>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u>	3. <u>5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지식과 경험	③ ----- ----- ----- ----- -----. -----

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u>2.</u> (생략) ④·⑤ (생략)	----- -----. 1. (현행과 같음) <u>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u>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2.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4.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 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

사 및 대표, 감사,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4·5급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는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③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에 해당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어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기록·관리한다.

제11조(정책실명제 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7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09. 20.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32호)

나. 회부일자 : 2022. 09. 23.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9. 27.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4.20.)에 따른 인용 규정 및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관계 법령들의 개정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작성·제출된 안전임을 검토보고 드림.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간 교환】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7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09. 2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3호)
- 나. 회부일자 : 2022. 09. 23.
-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9. 27.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구에서 취득(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토지 및 건물,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토지 일부), 처분(창작연극 지원시설 조성 토지)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취득할 시유재산은

- 성북벤처 창업지원센터(장위동 65-154) : 토지 1,825㎡(553평), 건물 1,388㎡(420.6평), 산정금액 80억5,706만원
- 서울성북미디어 문화마루(길음동 1286-8) : 토지 3,579㎡ 중 1,710.9㎡(518.2평) 취득, 산정금액 169억3,448만원

○ 처분할 구유재산

- 창작연극지원시설 조성 중(동소문동1가 1-4, 2) : 토지 2,760㎡(836.5평), 산정금액 239억6,114만원

○ 취득(시유재산)과 처분(구유재산)의 차액

- 취득계 : 249억9,154만원, 처분계 239억6,114만원, 교환차액 10억 3,040만원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구유재산과 시유재산 간 교환)은 취득하고자 하는 장위동 65-154(벤처창업지원센터) 토지 및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향후 성북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며,

길음동 1286-8(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은 우리구와 서울시의 공동소유로 불일치한 토지·건물의 재산권 비율 일치를 위한 법정 토지권 확보(1,710.9㎡ 추가 확보)가 필요함.

또한 처분하고자 하는 동소문동1가 1-4, 2 토지는 우리구 소유로 현재 서울시에서 창작연극지원시설을 조성 중으로 서울시로의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 일치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와의 토지교환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9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09. 2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4호)

나. 회부일자 : 2022. 09. 23.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9. 29.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 권익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저임금노동자, 청소년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의 권리 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 확립으로 노동 경쟁력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위탁 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 위치 :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206호(성북구 화랑로 211)
- 규모 : 36.3m²(11평)
- 시설내용 : 사무공간 및 상담실
- 최초위탁 : 2017. 7. 10.
- 현재위탁 : 20. 01. 01. ~ 22. 12. 31.(3년)
- 위탁기관 : 서울일반노동조합(대표 김형수)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직원 20명)
- 예산
 - 2020년 : 3억7,042만원(전액 시비)
 - 2021년 : 3억6,291만원(전액 시비)
 - 2020년 : 3억7,120만원(시비 3억1,498만원(85%), 구비 5,622만원(15%))

○ 성북구 지역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당사자 역량은 취약하고,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 등 이들을 위한 사업수행에 참여할 단체가 전무한 상태임. 열악한 성북지역 노동시장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고, 노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및 성북구 차원의 노동정책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다각적인 노동 지원사업이 절실한 상태이며,

○ 기존의 근로자 복지시설이 주로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권익센터는 취약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사업에 집중하게 되는 특성이 있음.

- 센터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노동상담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자교육 및 취업지원, 노동자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기타 노동복지증진 사업을 꾸준히 해왔으며, 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취약근로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조건, 차별적 대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며, 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9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09. 2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5호)

나. 회부일자 : 2022. 09. 23.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9. 29.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2) 단서조항에 따르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기정예산 1억3,524만원보다 23.01%인 3,111만원이 증액된 1억6,635만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

- 성북구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6조3)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성북나눔발전소 운용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이며,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6조(기후변화기금) ① 구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가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한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4.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위한 지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개정 2020.12.31.)
 5.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 [본조신설 2013.9.26]

기금의 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고효율 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등임.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에 따라 3,111만원의 추가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하여, 2022년도 기금을 기정예산 1억3,524만원에서 1억6,635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7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09. 2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6호)
- 나. 회부일자 : 2022. 09. 23.
-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9. 27.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 가. 마을활력소는 누구나, 언제나,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 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가 지역주민 및 이용
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 다.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를 운영
주체의 수입금(사용료·수수료·비용)으로 충당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위탁하고자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에 의거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동의안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234(길음 지하보도 내)에 설치한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의 자립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주도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 된 것으로,
-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는 길음 지하보도 내, 140.25㎡(42.5평)으로 연습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사무실, 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 위탁기간은 3년(위탁시기 2023년 1월 이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임.
- 위탁사무의 주 내용은 마을활력소 운영 및 관련 사무,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소요 예산은 없음(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 수입금으로 충당)
- 마을활력소 조성 추진경과
 - 2019. 9.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지원 사업 신청(3개 단체 : 길음예술사랑방,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문화재단 컨소시엄)
 - 2020. 6. 모두의 공간 마을활력소 선정(서울시)
 - 2020. 8. 길음지하보도 도로 점용 허가(건설관리과)
 - 2020. 10. 사업 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통보

- 2021. 6~11. 리모델링 1억6,776만원(리모델링 1억2,776만원/물품구입 4,000만원)
- 2021. 11. 길음마을활력소 운영위원회 일반회원 모집공고
- 2021. 12. 길음아지트 운영위원회 구성

○ 본 동의안은 주민참여를 통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자립적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책임성을 강화, 주민 주도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예산 절감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할 수 있는 지역성과 전문성을 기반한 공간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운영 주체가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구청장이 제출한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